

CNI 세미나 2021-014

충남형 공공갈등관리 체계 재구축 및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군 공공갈등실무자 합동워크숍

- 일 시 : 2021. 6. 30(수), 14:00 ~ 17:00
- 장 소 : 논산계룡농협 계룡로컬푸드센터 3층 회의실

충남형 공공갈등관리 체계 재구축 및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군 공공갈등실무자 합동워크숍

I. 워크숍 개요

□ 목 적

- 공공갈등은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정책지연, 사회적 비용증가, 공동체 파괴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지역사회 기반의 시민참여형 공공갈등 관리 방식이 주목받고 있음
- 충청남도에서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형 갈등 관리 계획을 설정하고 있으며,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시·군간 정보공유를 통한 정책의 방향성 및 협력방안 마련이 요구됨
- 워크숍을 통해 갈등관리 정책공유, 갈등의 발생과 해결과정에 대한 지역 네트워크 조직 활용 논의를 통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갈등 해결과 협력방안,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정책공유) 지역사회 기반의 시민참여형 공공갈등 관리방안에 대한 실효성 등 정책 토론
- (정보교류) 도·시·군 간 정보공유를 통한 정책의 방향성 및 협력방안 마련
- (협력강화) 공공갈등 예방과 대응 협력방안 토론 및 의견 수렴

□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21. 6. 30.(수), 14:00 ~ 17:00
- 장 소 : 논산계룡농협 계룡로컬푸드센터 3층 회의실
- 대 상 : 45명
 - 도(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공공갈등 현안 담당자 : 10명
 - 시·군 공공갈등 관리 담당자 및 현안 담당자 : 30명
 - 충남연구원 : 5명(사회통합연구실)
- 주최·주관 :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II. 주요 행사계획 및 일정

□ 주요 내용

- 2021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 설명 (도 갈등정책팀)
- 갈등관리전문기구 운영계획 설명 (충남연구원)
- 주민자치조직 활용을 통한 공공갈등 관리방안 발표(충남연구원)
- 공공갈등관리 현안 사례 발표(2개 시·군)
- 정책토론 : 시·군 공공갈등 현안 및 사례 토론 및 의견수렴

□ 주요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30 ~ 14:00		◦ 등록 및 접수	
14:00 ~ 14:05	5'	◦ 개회(국민의례) 및 참석자 소개	전창수 (갈등정책팀장)
14:05 ~ 14:10	5'	◦ 인사말씀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
14:10 ~ 14:20	10'	◦ 정책발표 I - 2021년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	전창수 (갈등정책팀장)
14:20 ~ 14:30	10'	◦ 정책발표 II - 갈등관리전문기구 운영계획	장창석 (충남연구원)
14:30 ~ 15:10	40'	◦ 주제발표 I - 주민자치회를 활용한 공공갈등 관리 방안 ◦ 토론 및 질의응답	고승희 (충남연구원)
15:10 ~ 15:20	10'	◦ 자리정돈	
15:20 ~ 16:00	40'	◦ 주제발표 II - 시·군 갈등관리 사례발표(2건)	
16:00 ~ 17:00	60'	◦ 토론 및 의견 수렴 - 좌장 : 박경철(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 토론자 : 주운현(건양대학교) 전지훈(충남연구원) 시·군 사례 발표자(2인)	
17:00		◦ 폐 회	



목 차



I. 2021년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 7

충청남도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전창수 갈등정책팀장

II.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43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장창석 전문연구원

III. 주민자치회를 통한 공공갈등 관리 방안 53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고승희 연구위원

IV. 시·군 갈등관리 사례발표 67

서천군 지역경제과 권종년 에너지팀장

부여군 환경과 이우순 자원순환팀장



2021년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

- 충청남도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전창수 갈등정책팀장





2021년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 **목 차** ■■■■■■

I. 추진 개요	1
II. 갈등관리 비전 및 추진 체계	2
III. 그동안 갈등관리 현황	3
IV. 갈등관리 단계별 추진계획	6
가. 갈등의 선제적·사전적 예방	6
① 「사전진단제」 추진	6
② 「갈등경보제」 운영	7
③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9
나. 사회적 합의에 의한 갈등 조정	10
① 공공갈등 토론회 참여 범위 확대	10
②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11
③ 갈등영향분석 실시	12
④ 공공갈등 민·관 현장컨설팅 운영 강화	13
다. 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협치 기반조성	14
① 민간 갈등조정활동가 네트워크 구축운영	14
② 갈등해결 역량강화 교육 추진	15
③ 우리마을 갈등해결 역량강화교육 시범운영	16
④ 보령 공군사격장 상생협력 민관군 협의회 운영	17
⑤ 갈등관리전문기구 지정·운영	18
V. 행정(협조) 사항	19
참고자료 : 공공갈등 관리현황 등	20~32

2021년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

I.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928호)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1417호)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 추진 배경

- 공공정책의 수립과 집행 전반에 걸쳐 공공갈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로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
- 지역간 개발의 불균형, 지역이기주의, 도민들의 권리의식 증대 등에 따른 갈등 조정 중재 필요
- 정책집행의 민간 부분조직의 참여증대로 갈등의 복잡성, 다양성에 따른 갈등발생 초기 적극적 대처 필요

□ 갈등관리 패러다임 변화

- 사회적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갈등을 회피의 대상에서 적극적인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수용 대상으로 인식
-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한 후 갈등 발생시 방어적 행태의 정책 추진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지역 현안 또는 사업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제안하는 주민참여 욕구 증대
- 중장기 정책방향과 시군경계 지역 내 이해충돌 등으로 시군 간 갈등에 대한 도의 중재역할 필요성 부각

II. 갈등관리 비전 및 추진 체계

비전	도민이 신뢰하는 갈등조정과 해소로 더 행복한 충남 실현
----	--------------------------------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갈등 선제적 대응으로 예방 강화 · 주민참여,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갈등 조정과 관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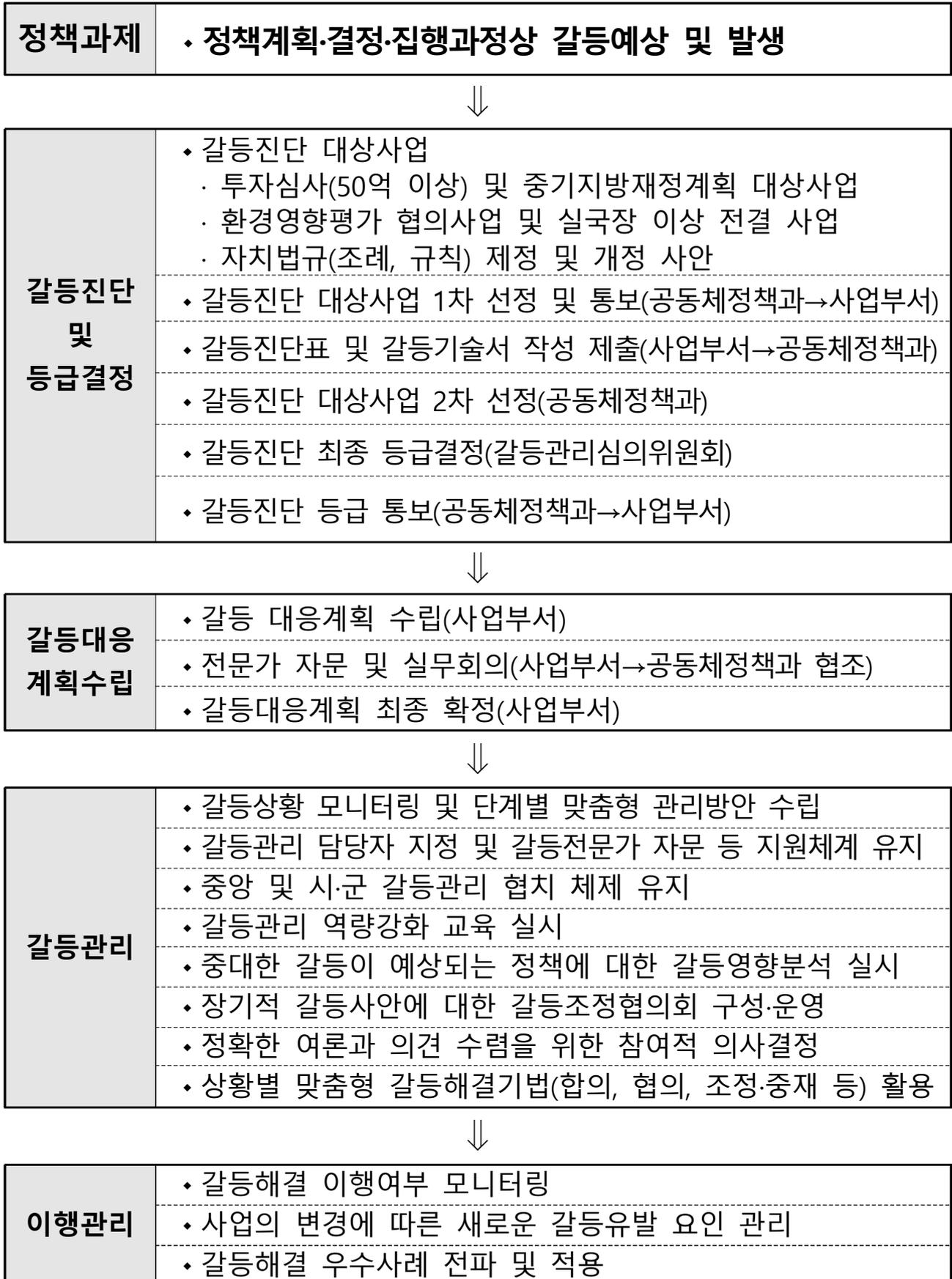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책 입안 시 갈등 사전진단 실시로 공공갈등 예방 강화 · 갈등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 · 갈등조정을 위한 현장활동 및 민·관 협력 강화
----------	-------------------------------------------------------------------------------------------------------------------------------------------------------------------



추진 과제	<p>가. 갈등 선제적·사전적 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전진단제」 추진 ② 「갈등경보제」 운영 ③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p>나. 사회적 합의에 의한 갈등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공갈등 토론회 참여 범위 확대 ②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③ 갈등영향분석 실시 ④ 공공갈등 민·관 현장컨설팅 운영 강화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p>다.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협치 기반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간 갈등조정활동가 네트워크 구축·운영 ② 갈등해결 역량강화 교육 추진 ③ 우리마을 갈등해결 역량강화교육 시범운영 ④ 보령 공군사격장 상생협력 민관군 협의회 운영 ⑤ 갈등관리전문기구 지정·운영
----------	--------------------------------------------------------------------------------------------------------------------------------------------------------------------------------------------------------------------------------------------------------------------------------------------------------------------------------------------------------------------------------------------------------------------------------------------------------------------------------------------------------------------------------------------------------------------------------------------------------------------------------------------------------------------------

□ 갈등관리 추진체계



Ⅲ. 그동안 갈등관리 현황

◇ 관리대상 : 12건(중점관리4, 부서 자체관리8) ※ 목록: 참고1

수준별 분석

[1단계] 표출기(0건)

[2단계] 심화기(1건) : 예당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단계] 조정기(3건) :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력 등

[4단계] 교착기(7건) :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등

[5단계] 해소기(1건) : 장항선 개량2단계 건설사업

분야별 분석

○ 지역개발 관련(1건)

- 예당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교통 관련(2건)

- 장항선 개량2단계 건설사업,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군 통과노선

○ 비선호시설(6건)

-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력, 공주시 정안면 채석장 개발,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부여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 국과연 안흥시험장 주변지역 환경피해

○ 수자원개발·이용·보전 관련(3건)

- 345kV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 건설,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 신서천화력 송전선로 주변지역 환경피해

추진상 문제점

- 장기 미해결 갈등 사안 또는 국책사업으로 획기적 갈등해소 어려움
- 이해관계자 간 협의와 합의에 기반한 갈등 조정·해소 역량 부족
- 갈등조정부서와 사업부서 간 협력 체계 및 초기 대응 역량 미흡
- 갈등 사안을 보는 행정과 도민의 눈높이 차이로 행정 불신 초래
- 사업부서의 갈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표출을 거부하려는 경향

향후 추진 대책

- 지속적인 모니터링, 적극적 조정 개입, 전문가 자문 등 갈등의 사전예방 및 초기 대응
- 송전선로 주변지역 피해 갈등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개선 요청 및 전국적 연대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 행정기관 간 업무 떠넘기기식 대응에서 벗어나 시·군 및 도 실무부서 간 긴밀한 협력 체계 마련
- 공익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주민피해대책 마련 등 도민의 입장에서 갈등해소 노력
- 갈등 조정 및 해소를 위한 주민참여 및 숙의기반 방안 마련

→ 갈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갈등관련 실효적 협력 체계 구축

IV. 갈등관리 단계별 추진계획

가 갈등의 선제적·사전적 예방

1 「사전진단제」 추진

- ◆ 도정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선제적 갈등 대응 방안 마련
- ◆ 갈등관리전문기구(충남연구원) 컨설팅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자문
➡ 공공갈등 사전예방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행정 신뢰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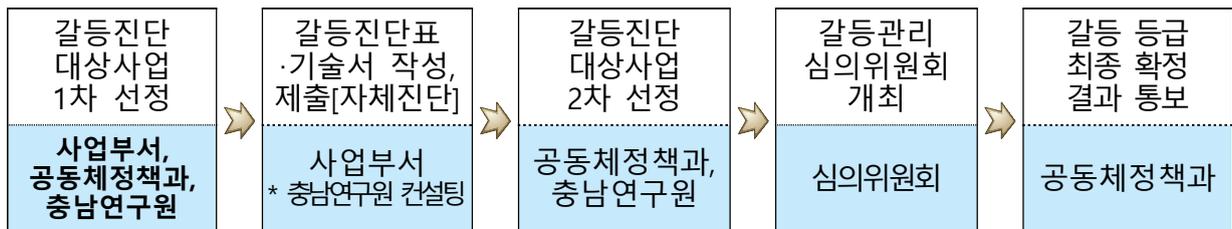
□ 추진 근거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 진단 대상

- 道 추진 단위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및 道 주요 승인 사업
- 투자심사 대상사업(50억 이상)의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
-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정·개정·폐지 사안 등

□ 진단 절차



□ 결정 방법(등급 구분 및 성격)

- 1등급 : 道 차원의 접근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중점관리 대상)
- 공공갈등 진단표(참고 2) 12개 항목 중 9개(70%) 이상인 경우
- 2등급 : 사업부서 자체 추진 및 공동체정책과 협력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부서자체관리 대상)
- 공공갈등진단표 12개 항목 중 6개(50%) 이상인 경우
- 3등급 :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사업
- 공공갈등진단표 12개 항목 중 6개(50%) 미만인 경우

□ 갈등 대응계획 수립

- 대 상 : 갈등진단 결과 1, 2등급으로 분류된 사업
- 추진방법 : 공공갈등 총괄·사업부서·충남연구원 실무회의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자문으로 대응계획 확정·마련
※ 필요시(갈등관리심의위원회 결정) 갈등영향분석 후 대응계획 마련

② 「갈등경보제」 운영

- ◇ 민원실태, 언론동향 등 **갈등 징후를 탐색, 경보 단계별 대응**
 ➔ 공공갈등 발생 시 단계별 대응을 통한 신속한 갈등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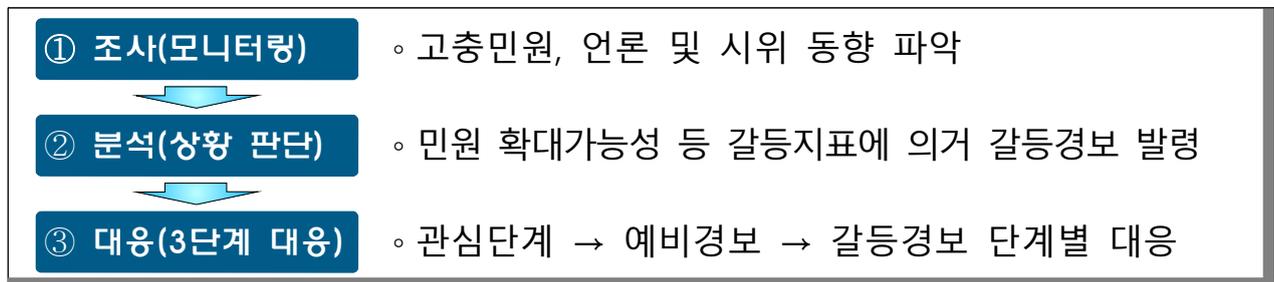
□ 추진 근거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 공공갈등 패턴

- (갈등 초기) 개인민원 ⇒ (갈등 증폭) 집단시위, 단체·위원회로 확대
- 초기에는 일반민원에서 갈등 진행 후 고충민원으로 관리
- 민원 접수 및 언론 보도 증가 ⇒ 특정 패턴(키워드) 형성

□ 추진 절차



① 조사(모니터링)

구 분	모니터링 대상
민원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대상 <u>고충민원</u>, 도지사민원, 언론 동향(SNS 포함) ※ 원칙적으로는 도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정책(사업)이 주요 대상임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실에 접수된 일반민원, 120충남콜센터에 접수된 민원 제외 ▶ 단순 질의·신고·제안, 개인간의 갈등을 기반한 민원 제외 ▶ 현장민원, 특화민원, 제안민원, 공익제보, 인권침해, 민생침해 제외

② 분석(상황 판단)

- 경보 기준 및 확대 가능성, 심각성, 조정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 관심단계 : 6개 지표* 항목 중 1개 항목 이상
 - 예비경보 : 3개 항목 이상, - 갈등경보 : 5개 항목 이상

갈등경보 기준지표

- | | |
|---------------------|-------------------------|
| ① 1주간 민원건수 2건 이상 | ② 5인 이상 집단 민원 발생 |
| ③ 2건 이상 민원 2주 이상 지속 | ④ 갈등상황이 언론에 보도(심각성) |
| ⑤ 개인민원 시위 3일 이상 지속 | ⑥ 20일 이상 집단민원 발생(한달 기준) |

③ 단계별 대응

관심단계 (갈등예방 활동수행)	예비경보 (갈등요인 제거 및 방지대책수립)	갈등경보 (갈등조정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총괄부서 해당부서 메일링 (전자우편 등) 알림 (민원 관리 중요성 환기, 조정제도 안내 등) ■ 사업부서 민원내용 분석 및 갈등 해소 방안 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총괄부서 갈등경보T/F팀 운영(갈등 대응 방향 검토 및 대안 도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갈등 조정 지원 ■ 사업부서 갈등경보T/F팀 심의 개최 전까지 갈등 대응 방안(안) 마련, 갈등 실무 대응 및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 강화, 필요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요청

※ 경보 발령 대상 : 경보 기준 등을 고려, 공동체정책과 자체 선정

- 갈등경보 결정·해제* : 갈등경보T/F팀 심의를 통해 결정

- * 해제 사유 : ① 협의 조정 등이 진행되어 더 이상 갈등이 확산될 여지가 없는 경우
 ② 4주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등 갈등이 소멸한 경우
 ③ 그 외 해제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갈등경보T/F팀 >

○ 구 성 : 공동체정책과, 사업부서 부서장 및 팀장, 전문가 등 10명 내외

※ 갈등의 심각성을 판단, 필요시 공동체지원국장 주재, 사업부서 실국장 참여

○ 검토내용

- 이해관계인들의 범위 등 갈등 현황 공유
- 갈등 이슈 구조 분석(사업 특성, 원인 및 쟁점 사항 등)
- 갈등 대응 방향 검토 및 대안 도출
- 갈등조정협의회 등 갈등 조정 지원 여부 및 방안 결정

⇒ 대응 방안에 대해 해당 사업부서에 참고하여 추진토록 권고

※ 사업부서는 검토 결과를 2일 이내에 공동체정책과로 대응계획을 마련·제출

3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 ◆ 분야별 갈등관리심의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 공공갈등의 심의·자문 등 중립적 갈등조정자 역할 강화**
- ◆ 사전진단제, 현장컨설팅, 갈등경보제 등 도 공공갈등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로 갈등 해소의 중요한 역할 수행
-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도지사 간담회」('20.1.15) 조치계획* 반영
- * 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자주 소집[공동체정책과-1014(2020.1.30.)호]

□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9조
- 주요기능 : 공공갈등 관리계획, 갈등관리 대상 지정과 해제, 갈등 영향분석,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심의·자문
- 운영기간 : 연중
- 정원 : 20명(민간인 15, 공무원 5)

□ 활성화 방안

- 위원회 전문성을 활용하여 **실·과 갈등 현안 컨설팅 수행**
 - 갈등 사전진단 대상 사업의 성과별 예방 대책 수립 시 자문 등
- **갈등 현장 컨설팅 참여** 등 중립적 조정자 역할 수행
 - 이해당사자(도민)와 실무부서(행정) 간 대화 분위기 조성
- 갈등경보제 운영 중 **갈등경보 발령 시 갈등경보T/F팀 참여**
 - 중대한 공공갈등에 대해 관련 분야 심의 위원 참여로 갈등 해소

□ 추진 계획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정기 2회, 수시 2회 확대운영)
 - 상반기(2회) : 사전진단제, 갈등영향분석 심의, 관리 대상사업 조정 등
 - 하반기(2회) : '21년 추진 성과 심의 및 '22년 갈등관리계획 자문 등
- 갈등 현장 컨설팅, 갈등경보제(T/F팀 등) 적극 참여 : 연중(수시)
- 제6기 갈등관리심의위원 구성계획 수립 및 위촉('21.5.~7.)
- ※ 현재 제5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19.7.~'21.7.)중으로 임기 만료

나 사회적 합의에 의한 갈등조정

1 공공갈등 토론회 참여 범위 확대(보완)

- ◇ 공공갈등 토론회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간 유기적 보완
- ◇ 이해당사자,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 제공

□ 추진 배경

- (도민 요구) 공공갈등의 주요한 주체로 참여 요구
- (행정 필요) 공공갈등 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 (신뢰 향상)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상호 신뢰 향상

□ 추진 방안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전, 주요 갈등 사안에 대한 사전 토론과정
- 필요 시 갈등현장 방문 추진(이해당사자 의견수렴)
- 전문가 발제와 각 이해당사자의 의견 종합
- 토론내용을 정리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시 자료화

□ 추진 방법

[1단계] 주요 갈등대상 선정

- 사업부서 신청 접수 또는 갈등 총괄 부서 지정

[2단계] 갈등 분석(현장 컨설팅, 영향분석)

- 공공갈등 요인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갈등정책팀)
- 해당 부서, 충남연구원 등 전문가 사전 검토

[3단계] 공공갈등토론회

- 이해관계자,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
- 내용 정리

[4단계] 토론내용 공유 및 갈등심의위원회 제공

- 토론내용 정리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자료화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현장성 강화
- 보다 현실적인 해소방안 마련에 도움

□ 추진 계획

- 2021년 공공갈등 토론회 확대 개최('21.하반기)

②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계속)

- ◆ 독립적인 제3자의 조정으로 이해당사자 간 조정·협의 지원
- ◆ 사전진단체 및 갈등경보제와 연계,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구성

□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4조
- 설치대상 : 공공갈등 당사자 간 조정·협의 의지가 있는 갈등
- 구성 : 행정기관, 당사자, 전문가, 심의위원으로 20명 이내
- 구성시기 : 갈등경보T/F팀 운영 등에서 이해관계자의 요청 시 협의하여 구성·운영

□ 추진 방법

[1단계]
적용 탐색

- 의제 및 당사자 파악
- 실무팀 준비, 조정협의회 대표 확인

[2단계]
협의체 구성

- 담당자 동의 확보 및 의견 교환
- 참여 예비대표 선정
- 참여자 구성 검토 및 공고

[3단계]
기본운영규칙 마련

- 협의체 운영을 위한 회의 진행
- 조정진행 절차의 협의

[4단계]
조정

- 의제, 일정, 쟁점 제시, 토론 진행
- 사실정보 확인 및 추가 정보수집
- 합의(안) 마련 공개 및 최종 도출

□ 그동안 추진사항('20년 기준)

-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관협의회」 운영
- 「가축사육 경계지역 조정협의회」 운영

□ 추진 계획

- 「서천 송전선로(서천-대천, 옥산 간) 실무협의회」, 「국방과학연구소 안흥 시험장 주변지역 환경피해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3] 갈등영향분석 실시(계속)

◆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갈등 발생 가능성을 예측·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결정 절차 모색

□ 추진 배경

- 도 주요 사업 중 갈등유발 요인 정책·사업 상존
- 갈등의 유형과 갈등 전개 양상 등 정확히 파악 필요
- 갈등 요인, 이해당사자, 쟁점 정리로 문제해결 대안 제시
→ 갈등영향분석을 통하여 공공정책 신뢰성 제고

□ 추진 개요

- 관련근거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7조
- 분석기관 :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 분석대상 : 지역주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해충돌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 등
- 분석내용
 - 공공정책의 개요, 기대효과, 이해당사자 확인 및 의견조사
 - **갈등유발요인과 예상되는 주요 쟁점 등 이해관계 파악**
 -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등
- 추진절차



- 활용방안
 -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갈등초기단계의 지침서 활용**
 - 관련 부서와 분석 보고서를 공유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

□ 추진 계획

- 갈등영향분석 1건*(국과연 태안 안흥시험장 주변지역 환경피해 갈등) 실시('21.6.~11.)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영향분석 대상 결정

4 공공갈등 민·관 현장컨설팅 운영 강화(계속)

◆ 갈등해결을 위한 현장컨설팅 등 공공갈등 선제적 예방

□ 추진 근거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 추진 방향

- 공공갈등 선제적 예방과 합의 형성 촉진을 위한 현장컨설팅 실시
 - ▶ 공공갈등 분야별 전문가 등 외부자문 기능 강화
- 현장의 쟁점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민원 최소화 및 정책집행 실효성 확보

□ 추진 방법

[1단계] 대상사업 선정

- 도, 시·군 정책사업 등 공공갈등 현장컨설팅 대상 선정(수시)

[2단계] 갈등 요인 분석

- 공공갈등 위험요인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갈등정책팀)
 - 해당 시·군, 도 사업부서, 충남연구원, 전문가 등과 사전 검토 회의

[3단계] 현장컨설팅 실시

- 중립적인 제3자의 갈등조정 전문가 등 현장컨설팅 실시
 - 갈등 유형에 따라 조정 전문가를 선정하여 대화를 통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컨설팅 지원

[4단계] 갈등해소 방안 수립

- 현장컨설팅을 통한 공공갈등 대응계획 수립
 - 현장컨설팅 결과 해당 시·군 또는 사업부서에서 대응 계획 수립 (갈등경보제 등 연계)
 - ※ 필요시 갈등조정 전문가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사안별 조정협의회 구성·운영으로 갈등해소 방안 마련

[5단계] 모니터링 실시

-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갈등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신속한 사후관리 및 시의적절한 갈등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 계획

- 서천 송전선로(서천-대천, 옥산 간) 공공갈등 현장컨설팅 추진('21.5.~6.)
- 2021년 공공갈등 현장 방문 컨설팅 홍보 및 신청 독려 : 연중(수시)

다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협치 기반조성

1 민간 갈등조정활동가 네트워크 구축·운영(보완)

- ◆ 갈등조정활동가 발굴 및 성장 지원으로 활동 집단 구성
- ◆ 민간 갈등조정활동가와 신속한 대응협력으로 현장 갈등 조정

□ 추진 근거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 추진 방향

- 공공갈등 현안사항 및 갈등현장 투입
 - (대상) '20년 교육을 이수한 민간 갈등조정활동가*
 - * 명칭변경: [기존] 갈등조정전문가('20년) → [변경] 갈등조정활동가('21년)
 - (역할) 시·군 갈등 현안 발생 시 현장컨설팅, 갈등조정협의회 등
갈등 조정 보조 수행
- 민간 갈등조정활동가 운영인원 확대
 - 민간 갈등조정활동가 확대 운영을 위한 신규 대상자 선발 및 교육 실시
- 공공갈등 자율 조정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 추진 방법

추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중 운영계획 수립• 갈등관리 및 조정 교육 설계, 지식·정보 공유 체계 구성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 활동 네트워크 구축(교육 및 운영 계획 협의)• 신규 민간 갈등조정활동가 교육 대상자 선발
갈등 조정 수행 및 성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갈등 민관 합동 컨설팅 추진<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교차 중립적 보조자로서 활동 보장• 공공갈등 발생 시 갈등조정 보조자 역할 수행• 활동보고 및 성과공유회 개최(연말)로 차년도 계획에 환류

□ 추진 계획

- '20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갈등조정활동가 대상 간담회 개최('21.6.)
- '21년 신규 민간 갈등조정활동가 교육 추진('21.하반기)

② 갈등 해결 역량강화 교육 추진(계속)

- ◆ 공공갈등 실무자의 전문성, 차별성, 집중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 실무자 갈등대응 능력향상 및 갈등대처에 적극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

□ 추진 근거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추진 방향

- 갈등 관련 정보(동향, 대응방안 등) 공유 등 실무 중심 교육 기회 제공
- 도, 시·군, 공공기관 공공갈등 담당자 등 대상 업무 유형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갈등관리에 대한 이해와 합의조정 및 갈등관리 기법 공유를 통한 갈등 대응 실무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대응방안 모색

□ 추진 개요

- 도, 시·군 갈등 담당자 대상 워크숍(반기 1회)
 - 공공갈등 인식전환 및 사례를 통한 대응 역량 강화
 - 도, 시·군 공공갈등 현안 점검 및 개선·협력 방안 토의
-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교육 추진(연 1회)
 - 공공업무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실무 맞춤형 갈등 교육
 - 갈등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모색 및 인식전환 교육
 - ※ 갈등관리전문기구(충남연구원) 협조

□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작년도,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교육 실적 저조(공기업, 공공기관 교육 미실시)

□ 향후 계획

- 2021년 갈등 해결 역량강화 교육계획 수립('21.6월)
- 도, 시·군 담당자 대상 갈등 해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21.6월, 11월)
 -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교육방안 마련 등 충남연구원과 협의

③ 우리마을 갈등해결 역량강화교육 시범운영(신규)

- ◆ 생활 속 다양한 이웃 간 분쟁 해결로 공동체성 회복
- ◆ 사례공유와 조정실습을 통한 지역 내 갈등관리 역량 강화

□ 추진 배경

- 층간소음, 반려동물, 쓰레기처리, 주차 등 생활 속 갈등 상존
- 공동체 내에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대형 사고로 발전)
- 이웃 간 갈등 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추진 개요

- 교육 명 : 2021년 우리마을 갈등해결 역량 교육
- 기 간 : 2021. 7월 중, 총 4회(예정)
- 대상/인원 : 1개 읍·면·동 / 20여명
- 주요내용
 - 갈등에 관한 법률, 조례 및 매뉴얼 소개
 - 갈등에 대한 인식 개선, 갈등 조정의 필요성
 -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교육 운영
 - 주제 설정을 통한 갈등 조정 시뮬레이션 및 토론

□ 추진 방법

[1 단계]
대상 시군 선정
(21.5월)

- 희망시군 수요조사 이후 시범 읍·면·동 1곳 선정

[2 단계]
양성교육 실시
(21.7월)

- 선정된 시군 대상으로 양성 교육 실시
 - 갈등관리전문기관 협조 및 민관협치 연계추진

□ 추진 계획

- 교육 희망 시·군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대상 선정(21.5월)
 - * 우리마을 갈등해결 역량강화교육 시범사업 계획 기수립(공동체정책과-3858(21.4.22.))
- 시범교육 실시(민관협치와 연계 교육 추진) (21.7월)

4 보령 공군사격장 상생협력 민관군 협의회 운영

□ 추진 개요

- 명 칭 : 「보령 공군사격장 상생협력 민관군 협의회」
- 구 성
 - 위원장 :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 위 원 : 충청남도, 보령시, 공군, 전문가, 지역주민 등 20명
 - 실무협의회 : 충청남도, 보령시, 공군, 전문가, 지역주민 등 20명

< 갈등개요 >

- 1962년 미8군사령부 보령시 신흑동 산253-1번지 일원에 사격장 설치
- 1981.7월 한국 육군으로 이관 후 1991.7월부터 공군 방공포사령부 운영
- 사격 시 발생하는 소음 및 탄피의 해양 퇴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로 주변지역 주민들과 갈등

□ 추진 경과

- 보령 공군사격장 상생협력 민관군 협의회 구성('17.4.28.)
-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환경영향 조사용역(' 18.4.~12.)
- 조사용역결과('18.12) 환경피해 원인 갈등에서 상생협력 관계로 전환하여 민관군 수용 및 상생협력 협약 체결(' 19.3.6.)
- 보령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력 민관군(실무)협의회 위촉식 ('19.4.22.)
- 상생협력 협의회 3회, 실무협의회 6회 개최(' 19.~' 20.)
 - 협력과제 15건 발굴
- 주변지역 상생협력 합의 체결('20.11.19.)
- 주변지역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20.12.~' 21.12.)

□ 추진 계획

-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력 민관군(실무)협의회」 지속 운영
 -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 점검 등
 - 주변지역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20.12.~'21.12./충남연구원)
 - ▶ 연구용역 분야별 실무추진단 구성('21.5월)
 - ▶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민관군 실무협의회 개최('21.7~8월)
 - ▶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민관군 협의회 개최('21.11~12월)

5] 갈등관리전문기구 지정·운영

◆ 갈등관리전문기구 지정, 도내 갈등 해소·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공공갈등 예방 및 갈등관리 활성화 등 추진

□ 운영 개요

- 지정기관 : **충남연구원(사회통합연구실)**
- 지정근거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8조
- 지정일 : 2016. 5. 4.
 - ※ 충남연구원내 ‘플러스충남정책포럼(’07.5.23.)’ 으로 운영하던 것을 개선 변경 지정
- 주요기능 : 갈등 조사·연구 등을 통한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공공갈등 예방 지원 등

□ 전문기구 역할

갈등관리 연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 현안 ‘갈등영향분석’ 연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선정, 도내 주요 갈등 현안에 대해 갈등 요인 예측·분석 및 대안 제시 ○ 갈등관리 전략과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갈등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공공갈등 유형 분석을 통한 갈등 접근성 및 활용성 향상, 『공공갈등 대응 DB』 구축으로 합리적인 갈등관리자료 확보 ○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지원
공공갈등 예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갈등 사전진단제 대상 사업 분석, 대응계획 수립 지원 ○ 공공갈등 현안 현장지원을 통한 갈등 해결방안 컨설팅 - 공공갈등 전문가·분야별 전문가 등 외부자문, 현장 컨설팅 및 간담회 개최 ○ 갈등관리 역량 강화, 실무관련 지식 공유 가능한 교육 지원
갈등관리 활성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갈등 정책토론회 개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갈등 현안을 주제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공론화·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책의견 수렴 및 제안기능 강화 ○ 道, 시·군 갈등관리 관계관 워크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갈등 대응 역량 강화 및 시·군별 사례, 정보 공유 등

□ 추진 계획

- 갈등관리전문기구(충남연구원)의 역할 정립
- 갈등관리전문기구 연간 및 중장기 업무추진계획 사전 협의: 연중
 - 공공갈등 사전진단 및 영향분석 각 1건, 공공갈등토론회 공동 추진 등
- '22년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 수립 관련 사전 협의

V. 행정(협조) 사항

① 실·국 협조 사항

- 사전진단체 대상 갈등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
 - 진단표(참고3), 기술서(참고4), 대응계획서(참고5) 작성·제출
- 갈등경보제 적극 참여·대응 : 연중
 - 갈등경보 대상은 진단표, 기술서, 대응계획서, 추진현황(참고6) 작성제출
- 신규 갈등발생 시 신속한 갈등현황 통보 : 연중
 - 갈등 관리카드 작성 제출(참고7)
- 갈등영향분석 대상 신청서 제출(참고8) : 연중
- 공공갈등 현장컨설팅 대상 신청서 제출(참고9) : 연중
-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토론회 등 적극 참여 : 별도 일정

② 시·군 협조사항

- 시·군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 자체 실정에 맞는 갈등관리 계획 수립 추진
- 갈등 조정 민간네트워크 현장활동 참여 등 적극 활용 : 연중
- 시·군 역량 강화(워크숍 및 토론회) 교육 협조
- 신규 갈등발생 시 신속한 보고 체계 유지 : 연중
- 공공갈등 현장컨설팅 대상 수시 제출(참고9) : 연중
- 우리마을 갈등해결 역량강화교육 시범운영사업 적극 참여 : 별도 일정

참고 1

2021년 공공갈등 관리 현황

부서	갈등명	수준	분야	대응계획
경제실 (1)	예당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중점관리]	심화기	지역 개발	- 반대측, 찬성측, 시행사, 관계자(도·예산군) 간 실무협의회 지속 추진 - 양측의 의견대립으로 조정 어려움 지속
미래 산업국 (4)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교착기	비선호 시설	- 청정연료 전환 선포 후, 공동협약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중 - 내포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 완공 목표 ('20년 착공, '23년 준공)
	345kV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 건설	교착기	수자원 개발·이용·보전	- 석탄화력발전소 및 송전선로 직접지인 경기, 강원, 전남, 경남과 연대구축 ▶ 지역별 논리개발 자료공유 및 공동 건의 방안 마련 ▶ 송전선로 및 보상지원체계 관련 법령개정 공동대응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	교착기	수자원 개발·이용·보전	- 154kV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되도록 노력 경주 -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과 주민건강 연구조사
	신서천화력 송전선로 주변지역 환경피해 [중점관리]	조정기	수자원 개발·이용·보전	- 서천 송전선로 실무협의회 구성 - 송전선로 관련 법령 개정 등 도 차원의 대응 노력
공동체 지원국 (1)	보령 공군대전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력 [중점관리]	조정기	비선호 시설	- 「보령 공군대전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력 민·관·군(실무)협의회」 지속 운영 ▶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 점검 등 ▶ 주변지역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 ('20.12.~'21.12./충남연구원)
농림 축산국 (1)	공주시 정안면 채석장 개발	교착기	비선호 시설	- 사업자 행정 소송(토석채취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에 따라 대응 및 동향 관리
기후 환경국 (3)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교착기	비선호 시설	- 사업자 순환토사 반출 등 산지복구 진행 중 - 토사 반출에 따른 비산 방지대책 및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부여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	교착기	비선호 시설	-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주민 간담회 수시 개최 및 주민협의체 운영으로 갈등 최소화 ※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사업 병행 지역 주민 지원사업 추진
	국과연 안흥시험장 주변지역 환경피해 [중점관리]	조정기	비선호 시설	- 갈등영향분석 추진 의뢰 - 실무협의회 구성 계획
건설 교통국 (2)	장항선 개량2단계 건설사업	해소기	교통	- 지역주민 및 해당 시군 의견 수렴 등 철도 시설공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철도사업 정상 추진 노력 ▶ '21. 상반기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1. 하반기 : 신성~주포 구간 공사 착공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군 통과노선	교착기	교통	- 현재, 환경영향평가 이행조건 및 문화재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내용*을 수렴하여 사업 계획 변경 추진 중 * 대흥면 임존성 통과 구간을 터널 통과로 사업계획 변경 행정절차 중

○ 갈등경보T/F팀 구성 : 10명 내외

- 내부위원 : 공동체정책과 2명, 관련 부서(기관) 과장 각각 1명
- 외부위원 : 갈등전문가 3명

○ 갈등경보T/F팀 회의 : 갈등경보 결정

- 안전 발생시 on-line 또는 off-line으로 수시로 운영

○ 갈등경보대상 심의 절차**① 공동체정책과에서 갈등경보 심의 대상 선정****② 갈등경보T/F팀 : 공동체정책과(10명 내외)에서 구성**

- 갈등전문가는 갈등 분야별로 공동체정책과에서 선정
- 관련부서는 심의위원 명단 제출

③ 개별 위원에게 심의 자료 송부

- 민원 및 사업내용, 쟁점사항, 관련 자료 등을 e-mail로 송부

④ on-line 또는 off-line 토론

- 밴드(BAND) 등을 개설하여 심의 자료 공유 및 토론 실시
- 자유 토론을 통하여 정보대상 여부 의견 교환 및 합의 도출
- 온라인으로 조정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의견 조율

⑤ 확대가능성, 심각성을 고려하여 갈등경보 대상 여부 판단**⑥ 검토 결과를 2일 이내에 관련부서는 공동체정책과으로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제출**

참고 3

공공갈등 진단표

● 사 업 명 :

● 진 단 일 자 :

● 사업추진부서 :

연번	공공갈등 진단 내용	여	부
1	다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집단이 존재한다. (다수 : 30인 이상 또는 1개 이상의 집단)	존재함	존재하지 않음
	-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집단이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수를 적어주세요. - 조직화된 집단의 수를 적어주세요.		
2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집단화가 더욱 강해지고 있거나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구성원 수 (당초: 명, 현재: 명)	그렇지 않음
3	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외 갈등이 표출되거나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갈등표출시기 - 사업계획 발표 시 () - 사업 추진(진행)시()	그렇지 않음
4	갈등이 표출되었거나, 표출된다면 표출상태는 어떠합니까? 모두 체크하여 주세요.	집단시위, 폭력 () 소송 () 항의성 방문 ()	공문 통한 민원제기() 인터넷 통한 민원제기() 기타 ()
5	갈등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다.	보도됨	보도되지 않음
6	보도된 매체 수	3개 이상	2개 이하
7	보도된 횟수	3회 이상	2회 이하
8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없음	있음
9	갈등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	갈등해결을 위해 별도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함	필요 없음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예상소요액을 적어주세요.		
11	갈등해결에 법령상 또는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다.	필요함	필요 없음
12	갈등해결에 충청남도를 제외한 2개 이상 관련기관의 협 조가 필요하다.	필요함	필요 없음
계			

※ 1등급(9개 이상 체크), 2등급(6개 이상 체크), 3등급(6개 미만 체크)

→ 1,2등급 확정시 갈등관리 목록 포함 관리

사업명 :

(작성일 :)

1. 사업현황

○

- 위치 및 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비 : 백만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공정률 : %

○ (사업추진과정 일자별로 정리)

-

2. 갈등개요

○

- 갈등배경 및 원인 :
- 발생(예상)시기 :
- 표출방법 :
- 이해관계자 :
- 쟁점사항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주장하는 내용)
지역주민		
시군		
충청남도	해당부서1	
	해당부서2	
사회단체		

○

- 대응실적:(갈등발생이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내용기록)
- 대응경과:(일자별로 정리)
- 담당부서의견 :

※ 작성매수 제한 없음

참고 5 | 갈등관리 대응 계획서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000실·국·원 (00과·담당관)	과장 :	
	팀장 :	
	담당자 :	

1 | 사업현황

추진근거

-
-

<작성요령>
 - 법규, 방침 등 사업추진 근거를 작성, 필요시 주요내용을 요약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년, 월까지 기재
-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 , 도비 : , 시·군비 :)

추진경과

-
-

향후 추진일정

-
-

2 주요 갈등개요 및 해소계획

갈등 개요

- 발생시기 : 갈등이 최초로 표출된 시기, 사업시행 단계(입찰공고, 고시, 설계, 시공 등)
- 표출형태 : 서면, 방문상담, 집단시위, 계약·운영 등 이행 거부 등
- 갈등 당사자 :

이해관계인 입장 : 갈등쟁점 구체적으로 기재

이해관계인		요구사항(주장하는 내용)
시·군 지역주민		
충청남도	해당부서1	
	해당부서2	
사회단체		

※ 이해관계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기재하되 갈등이 우려되는 경우 추정하여 기록

갈등 진행경과

- 최초 갈등 표출시부터 현재까지 진행경과를 일자별로 자세하게 작성
-

갈등 진단 결과

- 진단일
 - 최초 진단일 : (최초 진단날짜 기재)
 - 진단시기 : 사업계획수립 계획시, 갈등발생 예상시, 갈등발생시 등 사유 기재
- 진단결과 갈등정도 분류 : 갈등진단표에 따라 진단한 갈등정도 기재

갈등 대응계획

① 갈등 쟁점사항

○ 쟁점(쟁점내용 등 사업추진부서 검토의견 기재)

○

② 갈등 해소방안

○ (법규개정, 정책변경, 추가재원 투입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조치 필요사항 기재)

○ 쟁점 (예시)

▷ 부서간 의견조정(정책회의 개최, 부서협의 등)

- 우리도 부서간 이견에 따른 의견조정 사항 유무 및 조정방안

- 의견조정 사항 있을시 갈등관리 총괄부서에 조정의뢰

▷ 갈등조정을 위한 이해관계인 간 갈등협의체 구성, 운영 등

- 갈등해소를 위해 대표인을 구성하여 협의체 운영 필요 여부 기재

- 사업추진부서에서 협의체 구성,

▷ 도의회 협조

- 도의회 및 관할지역 의원 협조 필요성

▷ 예산 편성

- 갈등해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또는 사업계획 변경에 수반되는 비용 등

▷ 법규 제정, 개정

- 법령 모순으로 발생한 갈등여부 파악 및 보완점

▷ 사업계획 수정, 보완

- 이해관계인과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변경

③ 향후 추진일정

○

○

※ 추가 제출자료

1. 사업계획 방침서

2. 주요 갈등내용 및 처리결과(공문사본 포함)

3. 법규 제·개정 관련 갈등의 경우 신·구 조문 대비표

4. 특정지역의 갈등, 건설사업의 경우 위치도, 현황 사진 등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사업 설명서 첨부 - 필요시 사업특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양식 변경 가능)

참고 6 **갈등경보 발령 사업 추진 현황**

(작성일 : . .)

사업명	
정보단계	(년 월) 예비정보, 갈등경보 등 정보 단계 기재후, ()에 발령 시기 기재
사업개요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즉, 사업목적, 기간, 규모, 위치, 주요 내용, 소요예산, 추진상태 등을 기재 (필요시 도면 등 추가)
쟁점사항 (이해관계인별 주요 의견)	사업 추진과 관련 이해를 달리하는 당사자들의 주요 의견을 정리하여 개별 기술 <예시> 충청남도 : 논산 태화산업단지 조성 (시설기피/환경보전) 연산면 표정리, 장전리 주민, 태성화학의 분진과 소음, 악취로 인한 극심한 환경피해 우려로 태화산업단지 조성 반대
추진경위	
추진현황	금회 기간중 사업 추진과 관련된 민원인(이해당사자) 동향 및 사업 추진 현황 기술
향후계획 (추진전망)	
추진부서	국(본부)(기관) 000과(부) (협조부서 :) 작성 시 주관 부서에서 협조 부서의 의견을 수합하여 작성

참고 7 공공갈등 관리카드

① <지자체별 유형> <관리시작년도> ②<시·군명>

③ 갈 등 명	○○에 관한 갈등	④ 갈등분야	비선호시설 등
⑤ 당 사 자	○○시군 ↔ ○○주민 등	⑥ 진행단계	표출기 등
⑦ 미해결유형	시설기피 등	⑧ 관련기관·단체	

1. 갈등 개요

가. 배경 및 원인 ⑨
 ※ 관계법령
 나. 주요 쟁점 및 갈등당사자의 주장(의견) ⑩

2. 주요 진행상황 ⑪

-
-

[갈등일지]

- '21. 1. 11: 갈등발생 등
- '21. 2. 22: 협의회 개최 등
- '21. 3. 10: 고등법원 제소 등

3. 향후 전망 및 조치계획: (장단기 전망사항 기재 ⑫)

- 조치계획(해결방안) ⑬
- 갈등조정계획 및 지원 요청사항 ⑭

□ 업무 담당부서

관계기관	주관과	과 장	팀 장	담당자	전화번호	비 고
○○도						
○○시군						
○○기관						

< 『갈등분쟁 현황 관리카드』 작성요령 >

□ 작성 요령

① 갈등의 지자체별 범위유형 기재

- 광역-광역 간: 갈등이 2개 광역지자체 간 또는 다른 광역지자체에 속해 있는 기초지자체 간에 발생한 경우
※ 예) ○○도와 ○○도간, 경기도와 강원도 ○○군간, 경기 ○○시와 강원 ○○군간
- 기초-기초 간: 갈등이 1개 광역지자체 내의 기초지자체 간에 발생한 경우
※ 예) 경기도내 ○○시와 ○○시간
- 광역-기초 간: 갈등이 1개 광역지자체 내의 광역과 기초 간에 발생한 경우
※ 예) 경기도와 경기도 ○○시간
- 중앙-지방 간: 갈등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지자체간에 발생한 경우
※ 예) 국책사업·지역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과 지자체 사이의 갈등(국토부와 경기도, 환경부와 경기도 ○○시 등)

② 시·도명: 해당 시·군의 명칭 기재

③ 갈등명: 갈등의 특징을 알 수 있게 핵심 내용으로 기재

④ 갈등분야

- 지방행정: 권한, 인사, 조직, 사무배분, 국유재산관리, 과세 재정 기타
- 지역개발: 주택단지,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공유수면, 그린벨트, 공원, 관광·휴양시설 관련 분쟁
- 교통 관련: 도로·철도·지하철, 공항·항만, 버스노선, 주차장 등
- 비선호시설(혐오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 산업폐기물·분뇨 처리시설, 원전관련시설, 묘지· 화장장, 복지관련 시설 등
- 수자원개발·이용·보전 관련: 댐건설, 전력시설, 수질보전(상수원보호구역)

⑤ 당사자: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주민, 시민·환경단체, 사업자 등

⑥ 진행단계

- 표출기(잠재된 상태), 심화기(집회, 시위단계), 교착기(사업중단 상태에서 갈등 잠복), 조정기(대화 협상 등 진행), 해소기(합의에 의한 해소 진행)로 구분 기재

⑦ 미해결 유형: 시설기피, 시설유치, 환경보전·공익요구, 인·허가 행정권한, 비용분담 보상요구, 협의부진, 기타로 구분 기재

⑧ 관련기관·단체: 갈등에 관련된 모든 기관·단체를 기재

⑨ 배경 및 원인

- 갈등의 배경 및 원인이 된 사건, 사업, 시책 등의 현황 및 개요를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

※ 필요시 도면 및 자료 등 별도 첨부

⑩ 주요쟁점 및 당사자 주장(의견): 쟁점 및 당사자별 주장 기재

⑪ 진행상황: 갈등의 전개과정 및 해결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을 육하원칙에 의거, 진행된 순서대로 상세히 기재

- 갈등 추이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일자별로 진행 상황을 정리
- 관계기관 회의는 참석자, 합의사항 등을 자세히 기재
- 집회 및 시위관련 사항은 참석인원, 주장내용, 결과 등을 기재
- 갈등일지: 사건별로 간단히 기재

⑫ 장단기 전망 : 단기해소 가능, 중앙부처 지원 하에 해소 가능, 장기소요 등 해결 가능한 사유별로 구분하여 기재

⑬ 조치계획 : 해소 전망, 향후 조치사항 및 해결방안을 기재

- 갈등 당사자간 합의 가능성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기재
- 쓰레기 매립장 설치, 군부대 이전 등과 같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원인인 경우 반드시 관계법령, 소관 부처의 조치계획 등을 기재

⑭ 지원요청 사항: 자체 조정계획 및 중앙행정기관 요청사항을 기재

- 자체 조정계획이 수립된 경우 세부내역을 붙임으로 함께 제출

참고 8 **갈등영향분석 신청서**

□ 사업명 :

사업개요	
주요경과	
쟁점사항	
신청사유	

※ 첨부 : 사업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도로(철도)노선도 등

※ 신청서 양식은 갈등 현안에 맞게 변경 가능

참고 9**공공갈등 현장컨설팅 신청서****공공갈등 현장컨설팅 신청서**

기관 및 부서(팀) 명		작 성 자	직급 : 성명 :
건 명			

1. 관련 법규, 상위 계획
○ ○
2.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3. 주요내용 및 컨설팅 요청 사유
(사업추진 과정, 갈등의 쟁점, 갈등 이해당사자의 주장, 컨설팅 요청 사유 등 간략 기재) ○ - ○ - ○ -
4. 기타 (언론 보도자료 등)
○ ○ ○

※ 관련자료 첨부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장창석 전문연구원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2021.06.30.
충남연구원 장창석



목차

- 03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 08 2021 업무계획

I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1. 설립목적
2. 주요 추진경과
3. 주요 업무
4. 2020년 주요 추진 성과

I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전문기구 운영 목적

- ① 최근 공공갈등이 점차 복잡화, 다양화 되면서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가 참여 필요
- ②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로 지정·운영 중이며, 공공갈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원활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도모
- ③ 지정근거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18조

제18조(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지원)

-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기구(이하“전문기구”라 한다)등을 지정·활용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원 또는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에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갈등관리 전문기구의 운영 지정서를 교부한다.

I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주요 추진경과

✓ 충남연구원(갈등관리 전문기관) 지정

2006.06

상생협력·갈등관리 포럼
운영계획 통보
(행정자치부 → 충청남도)

2006.07

상생협력·갈등관리 포럼
운영계획 통보
(충청남도 → 연구원)

2006.10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창립

2007.05

포럼정관 개정에 따른
사무국 설치

2007.05.23.

포럼운영기관 지정협약
(충청남도 ↔ 충남발전연구원)

2007 ~ 2016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

2016.05.04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관 지정
(충남연구원)

- 2016~2018 : 공공갈등연구팀 운영
- 2018~ 현재 : 사회통합연구실
업무영역으로 갈등연구 지원

5

I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주요 업무

✓ 갈등현장의 조정 및 해결을 위한 지원

✓ 갈등영향분석의 수행

✓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활용

✓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조례·제도·문화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상생·협력 및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2020년 주요 추진성과

✓ 갈등영향분석 연구

- 도, 시·군 선정 2건 수행
- 2020 충청남도 공공갈등 사전진단
- 산업단지내 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갈등영향분석

✓ 갈등관리 연구

- 충청남도 갈등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 공공기관 갈등관리 역량강화 워크숍

- 충남도, 시·군 갈등관리담당관 대상 워크숍
- 도내 공공갈등 현안 현장세미나

✓ 갈등관리 현장지원

-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지원
- 지역갈등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지원

✓ 공공갈등연구팀 운영을 통한 갈등관리관계관 업무지원

2021 업무계획

II

1. 추진방향
2. 주요 업무계획
3. 주요 업무계획추진 방향

II 2021 업무계획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업무 목표

공공갈등 연구를 통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지원



제도적 변화에 따른
공공갈등 관리 방안 연구



충청남도
갈등관리지원체계
재구축 및 관련정보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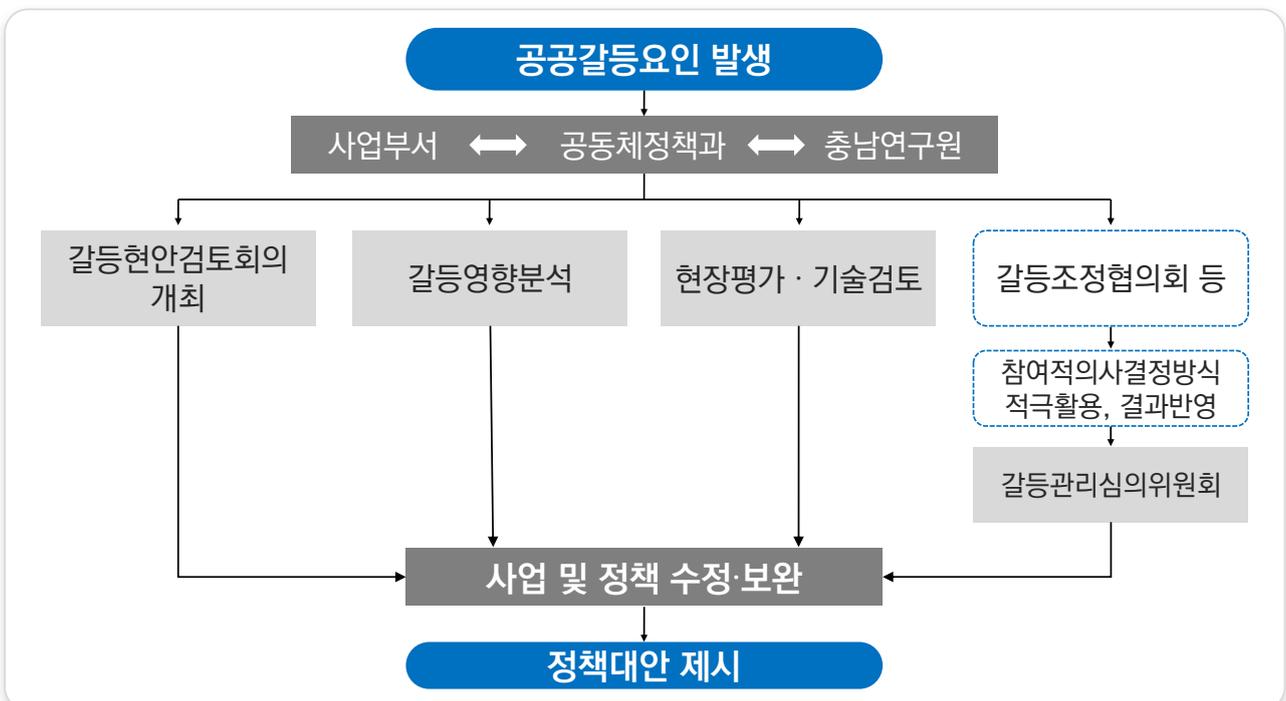
충남도, 시·군
협력관계 강화

9

II 2021 업무계획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갈등조정 체계도



10

II 2021 업무계획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주요 업무 방향

✓ 공공갈등 제도변화 대응

-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 지방분권 강화, 공론기구 운영 등 제도 및 정책의 변화 모니터링
- 갈등관리 제도의 변화와 운영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협력강화

✓ 공공갈등 정책연구 지원

-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책 연구 지원
- 공공갈등 연구의 다양화 영역

✓ 공공갈등 관리 인식 증대

- 공공갈등 현안에 대한 토론 문화 확산
- 공공갈등 해결 과정 민·관 협력 강화

11

II 2021 업무계획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주요 업무계획

✓ 공공갈등 정책연구 지원

- 도, 시·군 정책 소통강화를 통한 연구수요 발굴
- 충청남도 공공갈등 현안 연구 수행
-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 정책 연구 수행

✓ 도, 시·군 공공갈등 시스템 구축 지원

- 도, 시·군 공공갈등 진단 및 대응방안 구축 지원
- 도, 시·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 공공갈등 인식 확산

- 공공갈등 현안 관련 토론회 개최
- 현장컨설팅, 갈등조정협의회 등 갈등관리 과정의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 운영 지원

12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주민자치회를 통한 공공길등 관리 방안

-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고승희 연구위원



주민자치회를 통한 공공갈등 관리 방안

2021. 06. 30.

충남연구원 고승희 연구위원

목차

I	서론	03
II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	06
III	주민자치회 실태와 문제	11
IV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16
IV	마치며	20

I

서론

I 서론

주민자치회를 통한 공공갈등 관리 방안

지방자치 부활 30년,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 제도적 성과와 함께 권한에 대한 초점으로 주민자치 논의 미흡

현 정부는 국민중심, 국민참여, 국민주권을 강조

- 주민자치의 필요성 인식 및 확대 추진

주민자치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참여

- 지역문제의 해결, 삶의 질 향상 등 대의제 보완 역할

지방정부의 주요한 정책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

- 행정의 민주성, 현실적인 문제해결능력 증대, 사회통합
- 주민의사 투입, 정책결정의 오차 수정

주민참여에 대한 정당성과 부정적 시각 현존

- 정책과정의 참여비용과 정책일관성, 주민대표자의 영향력 등의 문제

정책주민참여에 대한 연구와 노력 진행 but 여전히 미흡

-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및 공감대와 자치역량이 요구

1998년 국민의 정부는 읍면동 기능전환사업, 1999년 일부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범실시사업 추진

- 2000년부터 전국 읍면동에 선택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가능

2010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 특별법 기반 2012년 12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본방향’ 의결
- 2013년 5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
- 전국 3,400여개 읍면동 중 49개 읍면동에 표준모델로 시범실시 중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 적극대응 필요

- 주민참여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주민참여형 자치권확대 등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에 대한 논의 및 주민자치역량 확보방안 모색

- 주민자치회의 문제를 검토하고 충남의 사례를 분석
- 주민자치역량 확보를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방안 제시

II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

1. 주민자치
2. 주민자치회

1) 주민자치

주민자치 : 주변 생활공간 중심,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 지역의제 발굴과 해결과정

→ **공동체 역량을 확보**

-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체의 참여와 영향력 확대
- 단순한 주민참여가 아닌 연대와 주체성 포함
- 이는 주민들만의 행동이 아닌 지방정부의 행정과정에 대한 참여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의 주인으로서 주민의 역할을 강화

- 주민들의 공유된 목표를 달성
- 주민 및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
- 지방정부의 통제

주민자치는 공동체 형성과 참여 과정 주민자치회의 문제를 검토하고 충남의 사례를 분석

- 사적감정 지양 및 공공성을 함양
- 포용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

주민자치는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고, 책임지는 민주주의 기반 요구

7

2) 주민자치회

2010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주민자치회 설치 규정

-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목적
- 해당구역 주민으로 구성
- 법령, 조례, 규칙에 근거 지방정부 사무일부 위임 또는 위탁 가능

주민자치회 → 통합형, 협력형, 주민조직형 3개 모형 확정

통합형 : 주민대표 의결기구(주민자치위원회)와 소속 하 집행기구 (읍면동사무소) 통합 형태

- 단체장 : 사무기구의 조직, 인사권,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
- 주민자치위원장 : 직원의 업무, 복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
- 주민자치위원회 : 읍면동 행정기능, 주민자치기능, 위임, 위탁사무 처리

협력형 : 현행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제도 보완, 발전

- 읍면동사무소 : 현행 기능 수행
-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 위임, 위탁사무처리, 행정기능 중 주민밀접 사항 협의, 심의 등

8

II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를 통한 공공갈등 관리 방안

주민조직형 : 행정기능 자치단체 수행

-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회사무 결정 및 집행
-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의결, 심의기구 설치, 운영
- 운영지원을 위한 유급사무원과 자원봉사로 기구 구성

구분	통합형	협력형	주민조직형
구성	자치위원, 공무원	자치위원	
권한	주민자치 및 행정지원 행정기능	자치 및 행정지원기능 행정기능 협의, 심의	자치기능 및 행정지원기능
위원회 역할	기능에 대한 결정(의결)	자치기능 결정 및 집행 행정기능 협의, 심의	자치기능 결정 및 집행
읍면동사무소	사무기구로 전환	존치, 기능유지	행정기능 지자체 수행
지방정부 관계	하부행정기관 성격	연계 협력	연계 협력
사무기구	공무원	주민	

9

II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를 통한 공공갈등 관리 방안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전파

- 총칙, 구성 및 운영, 위원,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보칙, 부칙 구성

표준조례안 :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권한 등 불명확 → 운영의 한계

-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행재정 의존
- 지역적 특성 반영 한계
- 특별법과 조례에 근거 별도의 법인격 미부여로 운영 제약

장	내용
총칙	조례 목적, 정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원칙 등에 대한 규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회의 구성방법 및 운영 규정
주민자치회의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보칙	재정지원감독 등 부가사항
부칙	시행, 경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

10

III

주민자치회 실태와 문제

1. 주민자치회 사례
2. 주민자치회 운영의 문제

III 주민자치회 실태와 문제

주민자치회를 통한 공공갈등 관리 방안

1) 주민자치회 사례

1 서울형 주민 자치

- 주민자치위원 직접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 참여예산제 편성, 자치회관 운영 등 실질적 수행권한 부여
 - 이를 보조하는 중간지원조직 “추진단” 설치
 - 주민자치회를 통한 민관협치 강화 특징

2 수원형 주민자치회

-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면전환 계획
 -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인 지역공동체의 주축조직으로 권한과 자원 부여
 - 자치계획 수립, 실행, 주민총회, 주민참여예산, 민주적 의사결정
 - 동 행정기능 중 주민밀접 관련 업무 협의

2 제주형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모형설계 본격화 미흡
 - 읍면동장 직선, 대표 상원인 민회 구성, 자치위원 역량강화, 공모방식 등 논의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운영 노력

- 행재정지원 등 실질적 주민자치회 운영 노력 지속 → 긍정평가
- 서울, 수원 등 주민의 활동이 대표조직인 주민자치회로 연결 노력
- 형식적 자문역할에서 대표성, 자치역량 보유한 실질적 기구 운영 노력
- 마을계획, 주민참여예산제 등과 실질적 연계 도모

그러나, 기구와 시설의 운영, 현장에서의 자원봉사 수준에 그침

- 자치단체 관변화 조직 등 비판
- 주민참여범위, 의제상정과 표결, 선택, 의결의 범위와 한계, 위원자격부여 등 운영상 한계 또한 제기

기존 주민조직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과 보충성 원리 적용 필요

- 현장 제기 문제의 자체해결과 미해결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 필요

2) 주민자치회 운영의 문제

주민자치회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

- 주민자치위원의 구성 : 공정성, 민주성, 대표성 등
- 전문성 및 역량
- 역할 및 자율성 한계 등

위원들에 대한 위상 및 역할 모호

- 주민자치위원의 위상과 역할이 모호 => 낮은 참여유인
- 인지도 및 부정적 인식 존재
- 실질적 운영의 대상이 아닌 친목의 대상
- 실제 마을의 문제 등은 통장, 이장이 추진

문화, 여가 프로그램 중심적 운영

- 주민자치사무 또는 지역문제해결 사무 거의 부재
- 문화, 여가 프로그램 중심의 전국적 획일성
- 존재의 이유로 연계 우려

위원 선정의 대표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미흡

- 역량 미흡 + 역량있는 주민 참여 미흡
- 관변 인물 중심 추천 및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 자치위원 및 이를 지원하는 공직자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한계

재정적 취약성에 따른 의존도 상승

- 주민자치회 운영 재원 확보방안 부재에 따른 독립성 한계
- 지방정부 예산 의존으로 자율성 저해

IV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1 주민자치회 중심 민관협치제도 강화

- 주민자치회 중심 민관협치제도 운영으로 위상과 역할 확보
- 다양한 제도의 연계와 실효성 확보
- 기존 단체들과의 관계 정립(개별운영 및 협의체 구성 등)

➡ 실질적 주민의 대변, 대표기구로서의 역할

2 신뢰성 있는 주민자치위원 위촉방안 강구

- 주민자치위원의 신뢰도는 제도운영의 핵심
-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은 권한확대와 연계
- 역량있는 위원의 지원과 지속적 역량확보 방안 마련
-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과 신뢰된 선출방식 마련
- 직선과 총회, 공개모집, 추천 등 다양한 방법 고려
- 자치위원의 역량 확인 방안 및 조건과 기준 마련 검토 필요

17

3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역할 정립

- 주민자치회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권한과 역할이 중요
- 행정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권한과 역할 구체화 필요
- 지방의회와의 연계, 협력 방안 제도화
-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구체화 합의 필요
- 법인화에 대한 논의와 검토 필요
- 재정확보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적 논의 필요(제도적 검토)

4 주민자치사업 활성화

- 주민자치회의 역량과 이에 부합한 사업의 발굴 및 활성화
- 자체 사업과 지방정부의 보완기제로서 사업 수행가능성 검토
-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수행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 및 사업의 차별화 전략 모색

18

5 주민자치회 활동의 객관성 확보

-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 위원 분이 아닌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방안 강구

6 지역의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역할 부여

-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지역개발 사업 뿐 아니라 갈등사안을 정리하고 전달하며 해결방안 등을 협의 및 추진

7 주민자치제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제도화 마련

- 주민자치회 운영조례의 검토와 기타 제도와의 연계 검토
- 운영 조례 뿐 아니라 타 제도 및 사업에서의 주민자치회 활용방안 검토

V

마치며

지금까지도 지방자치 및 주민자치를 위한 많은 시책 추진

- 성과도 있으나 여전히 미흡
- 특히, 주민자치와 참여는 여전히 제도적 논의 필요

주민자치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를 위해 주민자치회는 매우 중요한 수단

-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 모형의 발전 구상 필요

주민자치의 특성상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운영 가능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와 이를 위한 역량 확보가 중요
- 신뢰와 역량이 확보되어야만 권한과 역할을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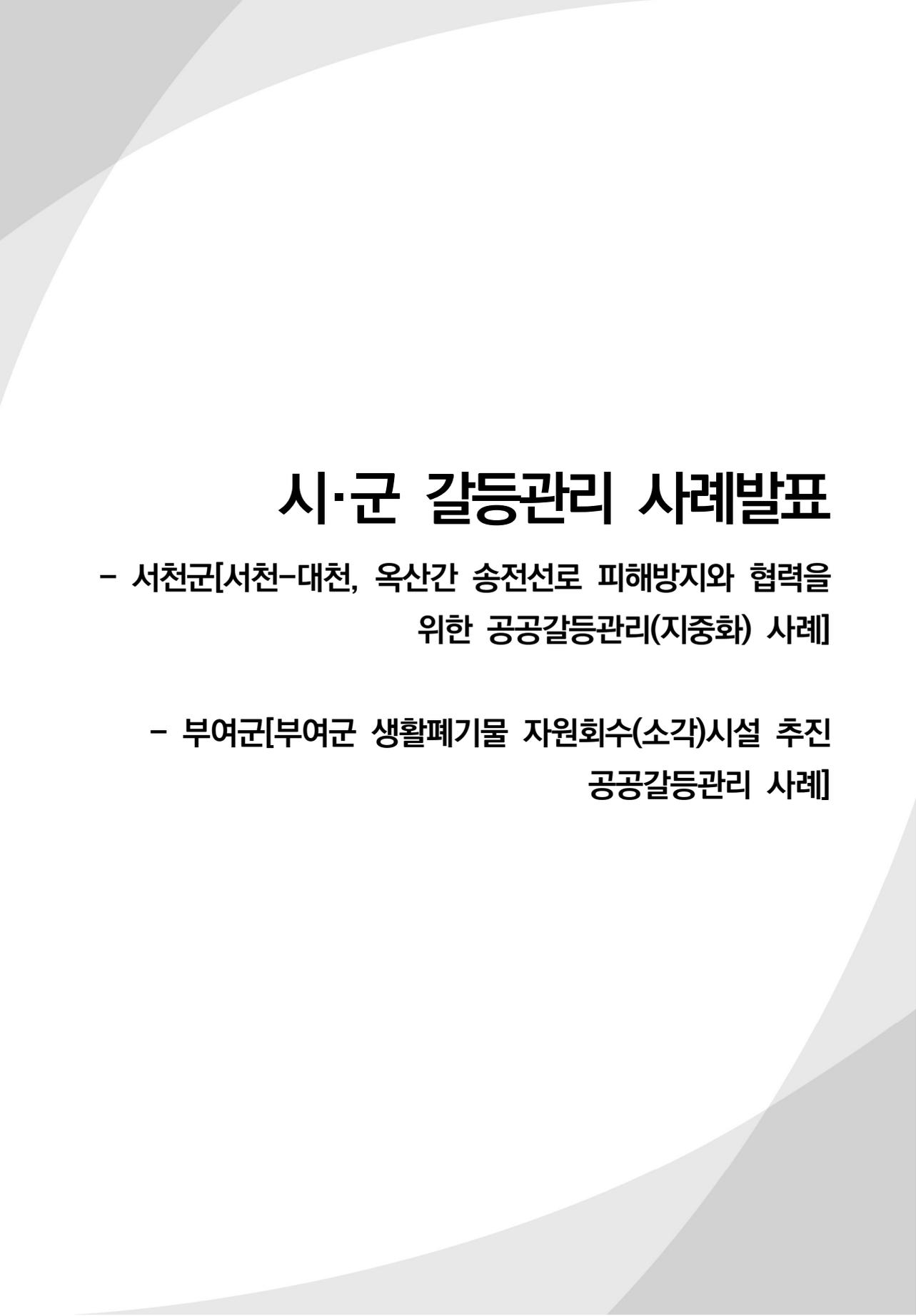
단기간에 작동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닌 장기적 과제

- 현재 참여하는 주민들의 인식과 역량도 중요
- but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참여 교육은 더욱 중요
- 교육청 및 평생교육과 연계한 주민교육을 다각적으로 모색
- 학계, 공무원, 지역주민 등 지속적 논의를 통한 발전을 모색

- 강창민 외. (2015). 제주형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곽현근. (2015). 주민자치 개념화를 통한 모형 설계와 제도화 방향. 「한국행정학보」, 49(3).
- 곽현근 외. (2017). 세종형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 방안. 대전세종연구원.
- 김상묵 외. (2004). “중앙정부 정책과정과 민간참여 유형”. 2004년도 한국행정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김필두 외. (2017).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 운영활성화. 세종특별자치시 2017년 정책이슈 리포트.
- 소진광 외. (2011).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방안 연구.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 심익섭. (2012).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방안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26(4).
- 조석주. (2006).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수준 진단과 발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최용환. (2014). 근린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방안. 충북연구원.
- 충남도청 내부자료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회를 통한 공공갈등 관리 방안



시·군 갈등관리 사례발표

- 서천군[서천-대천, 옥산간 송전선로 피해방지와 협력을 위한 공공갈등관리(지중화) 사례]
- 부여군[부여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소각)시설 추진 공공갈등관리 사례]

서천-대천, 옥산간 송전선로 피해방지와 협력을 위한

공공갈등관리(지중화) 사례

2021. 6. 30.



목차

- 1 현황 및 필요성
- 2 서천군 송전선로 직하지역 주민의 목소리
- 3 유관기관 정책 및 공식입장
- 4 타 지역 송전선로 지중화 사례
- 5 서천군 흥원구간 송전선로 계획(안)
- 6 갈등해소를 위한 실무협의회 제안 및 구성·운영

1 현황 및 필요성

○ 현황

◆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0% 충남도내 입지, 송전선로 유지관리 미흡

- 도내 1,397km(전국 16,185km)의 송전선로와 4,166기(전국 42,568기)의 철탑 입지
- 도내 송전선로 지중화율: 1.3%(전국 최하위), 서천군 지중화: 2.7%(국립생태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지중화율	89.6	46.7	27.8	73.0	43.0	28.9	6.7	20.6	18.3
구분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평균
지중화율	1.9	1.3	2.4	5.3	7.0	3.3	1.3	34.7	12.9

◆ 기설 154kV 송전선로 노후화, 선하지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 시급

선로명칭	위 치	연장	철탑개소	사용개시
서천-옥산선	서면 마량 ~ 부여 옥산	27.36km	89개소	1981. 11월

○ 필요성

행 정	지역경관 개선, 주민피해 구제, 지역자원과 주민의 상생유도
전기사업자	노후 송전선, 철탑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실행계획 마련
지역주민	35년 송전선 피해조사 및 보상, 송전탑 철거, 선로 지중화

1 현황 및 필요성



서면 흥원마을 인근 송전탑·선로(6호기)



서면 흥원마을 인근 송전탑·선로(7호기)



서면 동리마을 앞 송전탑·선로(17호기) 지반고가 낮아 영농장비 이동시 안전 위험

2 서천군 송전설로 직하지역 주민의 목소리

○ 갈등민원 현황 및 대응

◆ (민원제기) 미세먼지·철탑·고압선 피해대책위원회

* (최초) 이설, 높이 조정 → (2차) 이설, 지중화 → (3,4차) 지중화(폐선부지 구간)

민원(요구)사항	대응요지	수용여부	비고
① 철탑, 송전선로 이설	- (국가) 국가기반시설, 공익설비 - (비용)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 (현지) 선형상 모든 철탑이설	수용불가	
② 송전선로 지중화 (폐선부지)	- 지중화 여부는 관리주체(한전) 심의 및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 폐선부지 매설은 다른 지역 주민과 분쟁(기존사업 협의필요)	신중한 접근필요	
③ 송전선로 높이조정	- 일부구간 선로높이 조정필요 - 중부발전 비용부담 시행 - 조정높이 15~20m (2021년 이후)	일부구간 시행예정	한전 시행
④ 피해지역(주민) 보상	- 송주법상 지원제외지역 - 선하지보상 기완료(일부 공탁)	기 완료	
⑤ 송전선로 주변주민 건강상위해	- (국가) 직하지역 기준치 이하 - (지역) 발주변사업으로 격년제 건강검진 시행(발전사 시행)	수용불가 시행중	

5

2 서천군 송전설로 직하지역 주민의 목소리

○ 주요활동

◆ (면담,건의) 지역 국회의원 면담, 대국민, 지역대상 홍보전개

- 김태흠 의원 면담(2020.6.12.)
- 피대위 주관 기자회견(2020.3.24.)

◆ (토론회) 석탄화력 피해와 대응방안 (2020.11.23 / 서천 문예의전당)

◆ (언론,방송) 지역신문, 전국방송을 통해 피해상황 전파

- 시사N 대세남(대전KBS 2020.12.15.)
- 서천 SBN뉴스(서해방송 2020.12.23.)
- 굿모닝 대한민국(139회) (KBS2 2021.1.18.)



6

3 유관기관 정책 및 공식입장

○ 산업통상자원부

- ◆ **현행법령 준수, 지중화 사업비용 50% 지자체 부담 원칙**
 - 과거, 현재 진행중인 지중화사업과 형평성 고려 서천군 요구사항 수용 불가
 - 지중화 전액 국비부담은 전국적 파장과 막대한 예산 수요로 현실적 접근 곤란
- * 충남도 출신 어기구 의원, 김태흠 의원 등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중

○ 충청남도

- ◆ **도내 송전선로 피해 공감, 법령개정 요구 및 단계적 개선 추진**
 - 부지사 주재 「탈석탄 및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TF」운영(충남연구원 용역 수행)
 - 에너지과 주관 「송전선로 피해 및 대책」현안과제 선정, 토론회 개최
 - 송전선로 직하지역 피해영향조사 시행(5년간 5억/년, 충남보건환경연구원)

○ 서천군

- ◆ **주민피해 공감, 충남도 및 화력발전소 인접지자체 연대 정책 건의**
- ◆ **홍원지역 외 154kV 송전선로 민원확산 분위기, 지중화비용 지자체 부담 수용 불가**
 - (정책접근) 법령개정(4개 법률) + 정책연대(충남도+국회의원 등)
 - (사업비) 법령상 지자체 50% 부담을 발전사 부담 유도
 - (주민대화) 피해위를 중심으로 홍원지역 주민과 소통채널 유지
 - (한국전력) 대전충남지역본부 송전사업부 및 본부장 차원의 관심 유지

피대위 입장
서천군의 적극적인 대응 요구

유관기관 입장
지중화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4 타 지역 송전선로 지중화 사례

사업명	원인,현황	담당기관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비 부담
① 화성 매송면 송전선로 지중화	1종 일반주거지 송전선로 횡단	한국전력 경기본부	83억	154kV송전선로 1.1km 지중화	한국전력(50%) +화성시(50%)
② 천안 청당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도심지 경관저해 전자파, 안전사고	한국전력 대전충남	50억	154kV송전선로 40m 지중화	한국전력(50%) +천안시(50%)
③ 서울 은평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도심지 경관저해 전자파, 안전사고	한국전력 서울본부	908억	154kV송전선로 5.0km 지중화	한국전력(50%) +서울시(25%) +은평구(25%)
④ 군산시 나운동 송전선로 지중화	도심지 경관저해 전자파, 안전사고	한국전력 전북본부	70억	154kV송전선로 1.4km 지중화	한국전력(50%) +군산시(50%)
⑤ 동군산(택지) 송전선로 지중화	도심지 경관저해 전자파, 안전사고	한국전력 전북본부	280억	154kV송전선로 4.1km 지중화	한국전력(50%) +군산시(50%)
⑥ 시흥시 장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LH공사의 가공선로 공사강행	한국전력 시흥시	2,000억	345kV송전선로 6개 송전탑	집단민원 발생



* 천안지구, 은평지구 장기분할상환제도 이용(5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한국전력 先투자

5 서천군 흥원구간 송전선로 계획(안)

○ 사업계획

- ◆ (사업위치) 서천군 서면 도둔리 (154kV 서천화력-옥산선 송전선로)
- ◆ (사업기간) 2022년 이후 (정책변화 및 법령개정에 따라 시기조정)
- ◆ (사업비) 약 300억 (지중화 220, 토지매입·보상 65, 제경비 15)
- ◆ (사업내용) 송전로 지중화 0.92km

○ 예정계획

구분	지하매설공법	전력구 길이	케이블 선종	가략공사비	공기
검토내용 (4~7호)	개착식 전력구(편측)	0.920km	XLPE 2500mm ² 0.950km×4회선	194억원 ('21년 표준단가)	30개월

구분	산출내역
사업 기간	- 용역 실시설계 및 심의: 5개월
	- 공사계약인허가(인허가는 계약과 병행): 2개월
	- 토목(전력구) 시공: 11개월
	- 케이블 시공(공사/계약/인허가는 토목공정중 진행): 8개월
	- C/S설치, 철탑철거, 부대시공: 4개월
총사업기간 : 30개월 [2.5년]	



* 자료출처: 한국전력공사

9

6 갈등해소를 위한 실무협의회 제안 및 구성·운영

○ 실무협의회 구성 前 상황

- ◆ (한국전력) 전기사업법, 타 지역과 형평성을 이유로 원칙적 답변 고수
- ◆ (중부발전) 「발전사업자」 강조, 송전선로 문제 대화 거부
- ◆ (피대위) 서천군청 앞 천막농성, 1인 시위, 상여 매고 가두행진

* 특히 한국전력, 중부발전에서는 사업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서로 책임 전가

○ 실무협의회 제안 및 구성

- ◆ (구성제안) 2021년 3월, 서천군에서 논의의 장 마련을 위한 구성 제안
- ◆ (협의단계) 실무 책임자 추천, 기관당 1명, 월 1회 이상 개최 합의
- ◆ (구성현황)
 - 명칭: 서천 송전선로 실무협의회
 - 기간: 2021. 5월~ 송전선로 관련 실무협의 도출(1회/월 이상)
 - 위원: 5~6명 내외

* 미세먼지·고압선철탑피해위2, 충남도 공동체정책과1, 서천군 지역경제과1, 한국전력공사1, 한국중부발전1

10

6 갈등해소를 위한 실무협의회 제안 및 구성·운영

○ 앞으로 추진계획

- ◆ ~ 2021. 12월 : 실무협의 결과 도출 및 MOU 체결
- ◆ 2022년 ~ : 실무협의 결과 이행

【연도별 추진계획(안)】

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이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추진계획	협의회논의 구성,운영	결과물도출 MOU체결	행정절차 (한전심의) 법적인허가	실시설계	사업발주	사업진행	사업진행



서천-대천, 옥산간 송전선로 피해방지과 협력을 위한 공공갈등관리(지중화) 사례

감사합니다



부여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소각)시설 추진 공공갈등관리 사례

2021. 6. 30.



목차

- 1 사업 개요
- 2 사업추진 배경
- 3 사업추진현황
- 4 기대효과
- 5 공공갈등 요인과 유형
- 6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들

I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건설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

부여군 위생매립장 수명연장

소각시 발생하는 폐열의 에너지화

▶ 사업 개요

사업명

● 부여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북고리 551-1(북고로 201) 외

시설규모

-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 30톤/일
- 소각방식 : 스토커식(연속식)
- 소각여열회수설비(발전시설) 1식
- 대기오염 방지시설 1식 총사업비 198억원

1. 사업 개요

▶ 사업부지 현황



부지면적	● 약 55,000㎡
시설용량	● 소각시설 30톤/일(신규)
기존시설현황	● 재활용선별시설 : 20톤/일

2. 사업추진 배경

▶ 현재 부여군은?

위생 매립장 용량 한계

- 세도면 위생 매립장 용량 한계 도달(2024년)
- 위생 매립장 한계 도달 전 소각시설 설치 시급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 도입 시급

- 전량 위탁처리 중 외부 변수가 많아 처리 어려움
- 전국229개 지자체 중 186개소 소각시설 운영 중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수도권 2026년부터 그외 지역은 2030년부터)



그동안 추진현황

- '06. 09. 부여군 재활용기반시설 및 소각시설 관련 시설 입지선정 계획 결정공고
- '08. 03. 입지선정 공개모집 추진계획 변경(소각시설→RDF)
- '08. 03.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기반시설 및 소각대체시설) 입지결정고시
- '08. 10. 장암면 북고리 마을 주민과의 협약 체결
- '10. 03. 폐기물 전처리시설(RDF 30톤/일) 국고보조사업 신청
- '11. 12. 주변 시군 광역화(부여, 보령, 서천) 무산
- '12. 03. 환경부 감사원 감사 RDF시설 설치 부적정 통보
- '16. 04. 자원회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국고사업 신청서 제출
- '16. 11. 국비보조사업 확정(환경부)
- '17. 02.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 '17. 07.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그동안 추진현황

- '18. 01. 용역 중지
- '19. 06. 공공갈등 현장 컨설팅 실시(충남도)
- '19. 08.~10. 자원회수시설 타지자체 사례조사 및 공공갈등영향평가 실시
- '19. 08.~ 장암면 주민대표와 군수님과의 간담회(5회) 및 주민 타지자체 소각시설 견학(2회)
- '20. 02.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구상 수립용역
- '20. 04. 장암면 전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상제안 추진
- '20. 05. 장암면 주민대표가 아닌 인근마을 청년회 반대표명
- '20. 07. 주변지역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공모선정(60억)
- '21. 01. 소각장 설치 반대대책추진위원회 구성 탄원서 제출
- '21. 01. 폐기물처리시설 변경동의 절차이행

▶ 그동안 추진현황

- '21. 01.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고시
- '21. 03. 반대대책위원회와 군수님 간담회
- '21. 03.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취소청구(본안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
- '21. 05. 집행정지 신청건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기각결정
- '21. 05. 환경부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최종승인

▶ 향후 추진계획

- '21. 10. 허가사항 최종승인(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통합환경인허가등)
- '21. 11. 시설공사 발주 및 착수
- '23. 12. 시설공사 준공

4. 자원회수시설 기대효과

▶ 자원회수시설 설치시 기대효과

● 부여군 생활폐기물 처리 개선

- 자원회수시설 설치로 부여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능
 - ⇒ 위생매립장 매립량 감소(매립연한 증대)
 - ⇒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용 감소
 - ⇒ 소내전력 생산으로 소각시설 운영비 감소

● 부여군 재정 절감 및 고용창출 효과 발생

- 폐기물 위탁처리비용 및 운영비 절감으로 **부여군 재정 절감**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시 지역주민 우선고용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갈등쟁점 및 해결방안

1

공공갈등이 되고 있는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2006년 부터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국가정책이 소각시설에서 소각대체시설로 소각대체 시설에서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집단민원발생 우려에 따른 공론화 과정 등 주민과의 대화를 소극적으로 대처함에 따라 **관주도형 사업 추진에 대한 신뢰성 및 공감대가 부족**

→ 소각시설 추진의 시급성, 당위성, 안전성에 대해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대화, 협상 실시

▶ 갈등쟁점 및 해결방안

2

소각시설 설치시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주민피해 우려와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NIMBY)

→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추진의 시급성과 최고의 시설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시설구축, 자원회수 시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3

소각시설이 입지한 마을 북고리만 전폭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불만

→ 소각시설이 입지한 마을에 주민지원사업 50억과 친환경에너지 타운조성사업 60억 사업을 추진중이며 장암면 전체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구상 중

6.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들

▶ 갈등해소를 위한 컨설팅 및 주민간담회 개최



6.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들

▶ 타지자체 소각장 주민현장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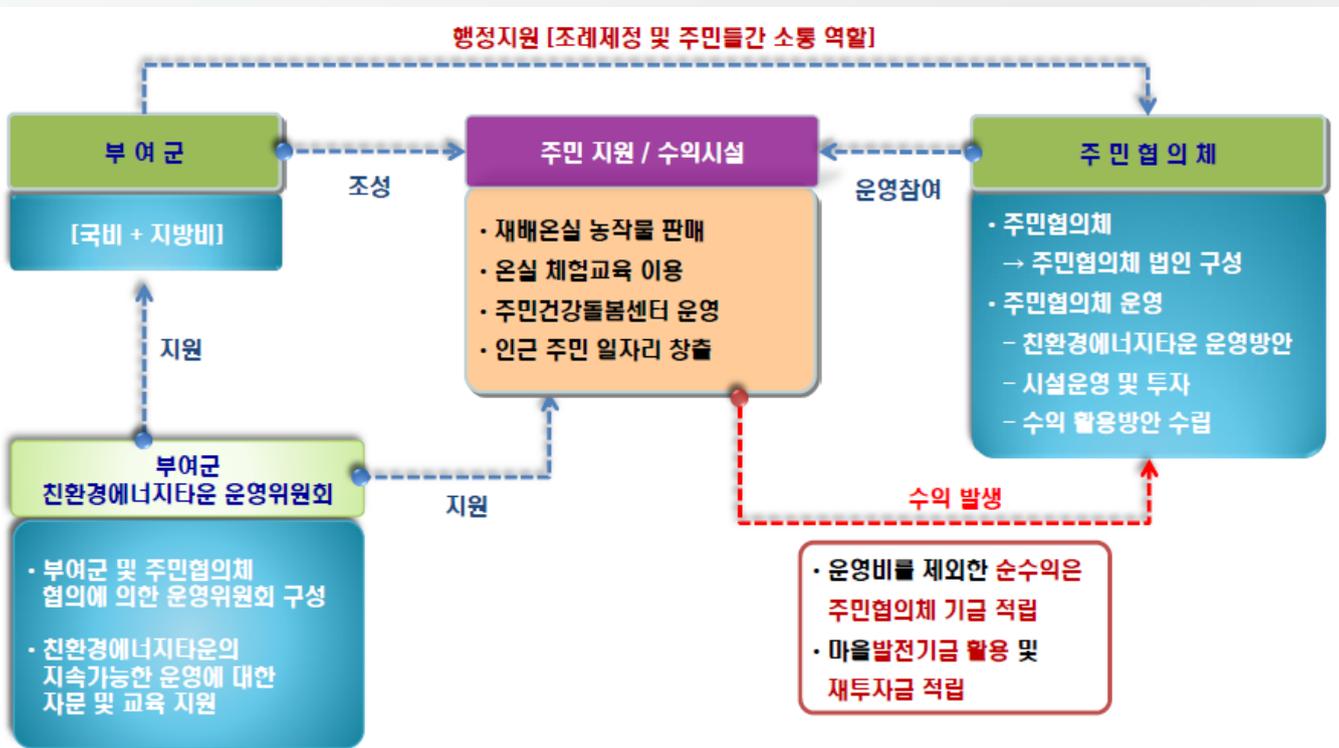
6.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들

부여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계획



6.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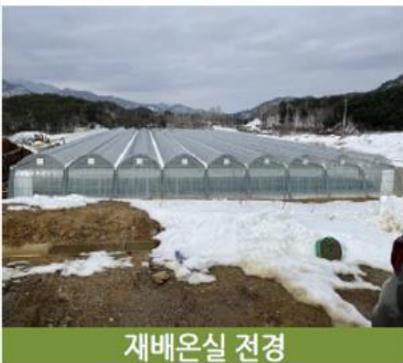
사업추진 및 운영계획



6.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들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착수보고 및 강원도 인제군 견학



재배온실 전경



재배온실 외부



재배온실 내부

6.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들



갈등해소를 위한 태도



- 갈등해소를 위한 중요 요소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신념 + 공감.

소통을 위한 담당팀의 적극적인 갈등해소 노력



- 갈등에 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와 자치단체장, 의회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



-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림
그러나 서로 상처를 덜받고 상대방에 명분을 주면서
끈기있는 갈등조정이 필요

6.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들

▶ 갈등해소를 위한 태도



- 갈등해소를 위한 큰 책임을 담당부서 혼자 짚어지지 말고 꼭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좀더 부드럽게 갈등을 해결해 나갈수 있음



- 혐오시설인 폐기물시설 설치 갈등인 경우 **친환경에너지 타운 공모사업**을 병행 추진해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권장



- 갈등은 정점을 찍어야 서서히 해소되는 것으로 강한 멘탈 필요

6.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들

▶ 갈등해소를 위한 태도

※ 공공갈등 및 사회갈등 상담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도움이 됨



- 갈등상담의 첫단계는 소통, 공감이며, 이는 상대방의 닫힌 마음을 열어 대화가 가능한 신뢰기반의 상태로 변화시켜야 함



- 갈등조정 및 협상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완고한 입장**을 현실에 **적용가능한 이해관계로 전환** 변환 시켜야 함



- 갈등당사자간의 직접적 조정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안적 분쟁해결을 위한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의 조력, 개입이 효과적임

감사합니다

부여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소각)시설 추진 공공갈등관리 사례



부 록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 2010-11-10 조례 제 3544호

(일부개정) 2014-07-10 조례 제 3915호

(전부개정) 2014-12-30 조례 제 394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성숙한 지방자치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합리적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갈등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정책을 수립하기 전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원인이나 요인을 조사·분석 및 그 영향의 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공공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도내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도정 갈등: 도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
2. 그 밖의 갈등: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② 적용대상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도지사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도정 전반에 걸쳐 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 공공갈등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한다.
2.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한다.
3. 소속 공무원에게 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2장 예방과 해결의 원칙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상호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할 때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판단될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충실히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8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당사자, 전문가, 각계 대표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2. 도 및 시·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관리대상 등의 지정·조정
3.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4조 제2항에 따른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5.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6. 제15조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참여
7. 그 밖에 도지사가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심의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언론인
4. 충청남도의회회장 및 시·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경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의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심의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괄 부서장의 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업무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공공갈등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의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4조(설치)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사안별로 갈등관리 총괄부서로 하여금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협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위원은 도지사가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2. 전문가
3. 심의위원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의장 등) ① 협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의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 갈등관리 전문기구

제18조(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기구(이하 “전문기구”라 한다)등을 지정·활용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원 또는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에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갈등관리 전문기구의 운영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갈등관리 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갈등현장 조정·해결 지원
2. 갈등영향분석의 수행
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배포·활용
4.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조례·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7. 상생·협력 및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8. 그 밖에 도지사가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

제19조(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점검·평가 등) 도지사는 년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갈등영향분석, 자발적·체계적 활동,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 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심의위원, 협의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2조(비밀유지) 심의위원 및 협의위원,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39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도지사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 및 갈등관리 전문기구와 그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심의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